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인증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85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안 제2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그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에 위임되었던 고용 인원 기준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

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절차 규정(안 제3조)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와 관련된 절차를 규정함

다.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규정(안 제6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라.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안 제7조, 안 제8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가사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 산정기준에 대해 규정함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기관) 합의 진행 중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11. 18. ~ 12. 28.) 예정

2) 행정규제 : 진행 예정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사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것(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가사근로자를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시킬 것(「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대상인 자에 한한다)
3.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②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둘 것(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관리업무를 겸할 수 있다)
2.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비영리법인의 경우 적용을 제외

한다)

3.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4.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할 것

제3조(범죄경력조회)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을 포함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가사근로자(이하 “아이 돌봄 가사근로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면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나.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2. 가사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아이 돌봄 가사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이 법 제1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동의서, 제2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

1. 근로제공 가능일 및 가능시간
2. 근로제공 가능지역

제5조(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서면 합의로 변경되는 경우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2항의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조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의미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자 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제7조(유급휴일)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 상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이하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이라 한다)을 1주 동안 개근한
가사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시간 산정 시 법 제14조에 따라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제공시간은 제외한다.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
항에 따른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 대표
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산정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제8조(연차 유급휴가)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1년간 실제
근로한 시간이 연간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의 80% 이
상인 가사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
만인 가사근로자 또는 1년간 실제 근로한 시간이 연간 이용계약에 따
른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의 80% 미만인 가사근로자에게 1개월간 이용
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가사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산정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10조에 따른 휴업·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의 수리
3. 법 제22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 등
4.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 인증취소
5.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업무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능력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지원시책과 법 제18조제2항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말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

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또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업무를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 수준과 지원 기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 및 가사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범위에서 가사근로자의 보수·보수액의 수준,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휴업·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무
-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가사근로자의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관련)

1. 유급휴일

가. 제7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frac{\text{4주간 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40\text{시간}} \times 8\text{시간}$$

2. 연차 유급휴가

가. 제8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text{연차 휴가일수} \times \frac{\text{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40\text{시간}} \times 8\text{시간}$$

나. 가목의 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연간 실제 근로시간을 1년 동안의 주수로 나눈 시간으로 하며, 제8조제2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실제 근로시간을 해당 월의 주수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3. 임금의 계산

가. 가사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제1호가목에 따른 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제1호의 경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가목에 따른 일급 임금으로 하며, 제2호의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법 제28조 제1항제1호			
1)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50	70	100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	50	70
나. 법 제 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사근로자에게	법 제28조 제1항제2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거나 이용계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1)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사근로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경우		100	200	500
2) 이용계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30 (이용계약 미포함사항 1개 호당,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50 (이용계약 미포함사항 1개 호당,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50 (이용계약 미포함사항 1개 호당,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다.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300	400	5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및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00	500	500
2)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100	200	300
3)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300	500	500
마.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등의 신	법 제28조	100	100	100

고를 하지 아니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제2항 제1호			
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보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자	법 제28조 제2항 제2호			
1) 정보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50	100	200
2) 정보 제출 요구에 거짓정보를 제출한 자		300	300	300
사.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또는 거짓 의견을 진술한 자	법 제28조 제2항제3호			
1)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50	100	200
2)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에 거짓 자료를 제출 또는 거짓 의견을 진술한 자		300	300	3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503